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환경부 자료 제공 -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 면제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 외에 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기기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단,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g 또는 30ml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

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폐기물로 배출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로 처리되는 의료기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란 법 제16조제3항의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및 그에 준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 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가능하고 이를 증빙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반용 플라스틱 : 출고 · 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2. 건축용 플라스틱 : 출고 · 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2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2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증빙내용을 검토하고 연 1회 이상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출고실적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태, 비대상 혼입비율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제1항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출고 · 수입량 중 재활용된 양을 제외한 출고 ·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률 증빙서류의 접수

7의3.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7의4.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플라스틱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는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

신 · 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포장의 재질 ·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7조(포장의 재질 ·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1회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단,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g 또는 30ml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생 략)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재료 · 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 · 재료 · 용기에서 제외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 7) (생 략)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바. (생 략) 〈신 설〉	마 . ---------- 1) ~ 7) (현행과 같음)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폐기물로 배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의료기기 바.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란 법 제16조제3항의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및 그에 준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 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가능하고 이를 증빙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반용 플라스틱 : 출고 · 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2. 건축용 플라스틱 : 출고 · 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2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증빙내용을 검토하고 연 1회 이상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출고실적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태, 비대상 혼입비율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제1항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부담금 대상 출고 · 수입량 중 재활용된 양을 제외한 출고 · 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 20. (생 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률 증빙서류의 접수 7의3.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7의4.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8. ~ 20. (현행과 같음)